

Contents 목차



2011년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 vii

제도개요 / xx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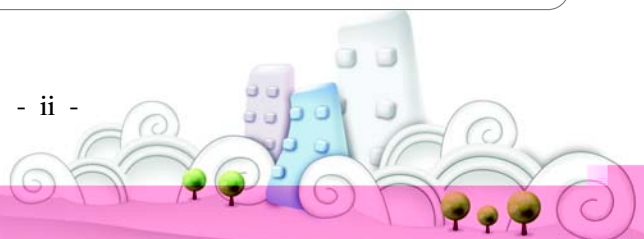
제1편 연금 지급 신청 / 1

1. 신청권자	3
가. 연금수급희망자	3
나. 대리인	3
다. 관계공무원	3
2. 신청 구비 서류	5
가. 필수 제출서류	5
나.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5
3. 신청기관 및 기간	7
가. 신청기관	7
나. 신청기간	7
4. 신청서 작성·상담	8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서명(날인)	8
나.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상담	9
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스캐닝 입력	12
5. 접 수	13
6. 신청관련 유의사항	13





제2편 자산조사 / 15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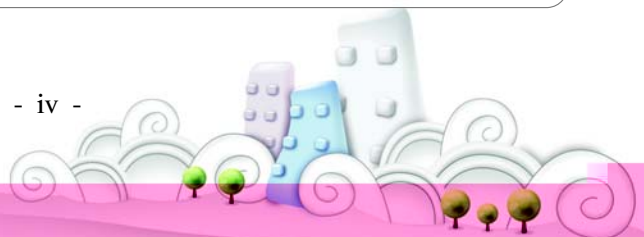


제4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67

1. 이의신청	69
가.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69
나. 이의신청 주체 및 신청대상 처분	69
다. 이의신청 기한	69
라. 이의신청 절차	69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70
바.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71
2. 행정심판	72
가. 행정심판의 개요	72
나.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72
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73
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74
마. 재결에 대한 불복	74

제5편 수급자관리 /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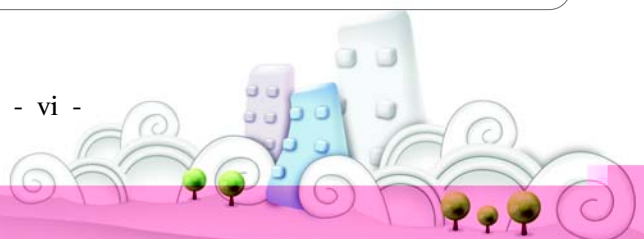
1. 수급자 사후관리	77
가. 변동사항 관리	78
나.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78
다.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87
2. 부당이득 환수	89
가. 부당이득 환수의 개요	90
나. 부당이득 환수 결정	90
다.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92
라. 결손처분	93
마. 소멸시효	94







제7편 서 식 / 109





2011년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0년	2011년
제1편 연금 지급 신청		
1. 신청권자 (p.3)	가.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	변경 가. 연금수급희망자 ○ 65
2. 신청 구비 서류	연금 지급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이 신청자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최소한의 증빙서류 징구	삭제
3. 신청기관 및 기간 (p.7)	가. 신청기관 ○ () - , , , - . . . ,	가. 신청기관 ○ () - , , , - . , . - . . e [()] (,)



구 분	2010년	2011년
4. 신청서 작성·상담	초기상담을 기초로 소득과 재산의 선정 기준 부합여부 검토	삭제
4. 신청서 작성·상담 (p.8)	참고 신청서 작성·상담시 필수 확인사항	추가 주의 신청서 작성·상담시 필수 확인사항 ☐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의 구분 - 65 「 e 」
4. 신청서 작성·상담 (p.9)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안 하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 수급권을 상실처리하고, 내국인 배우자는 노인단독으로 변경처리.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노인부부로 처리 가능	변경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안 하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 수급권을 상실처리하고, 내국인 배우자는 부부1인으로 변경처리 .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부부2인으로 처리 가능
4. 신청서 작성·상담 (p.9)	⑥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추가 ⑥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거주불명등록자가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대리인 신청불가) -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자인 사람이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거주불명등록자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금융정보조회 동의서 확인 및 접수가능(유선 등을 통한 간접확인 불가)

구 분	2010년	2011년
		(예외) 거주불명등록자인 배우자가 도피, 지병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는 미징구하고,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되 금융재산 조회는 제외
4. 신청서 작성·상담 (p.10)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 불명등록 후 신청 가능	변경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4. 신청서 작성·상담 (p.11)	2) 「 e 」 ○	삭제 2)
4. 신청서 작성·상담 (p.11)	○ , , 3	추가 ○ , , 3
제2편 자산조사		
2. 자산조사의 종류 (p.20)	다. 연간조사 ○ . 1	변경 다. 연간조사 ○ . 1 , .



구 분	2010년	2011년
3. 소득조사 (p.21)	가. 개관 1) 소득 및 소득평가액의 의미 () * 가구특성지출비용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중 중증장애인수당(13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 금액(37만원) 공제, 일용직(1년미만) 근로소득금액 차감	변경 가. 개관 1) 소득 및 소득 평가액의 의미 ()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중 중증장애인수당(15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40만원) 공제, 일용직(1년이하) 근로 소득금액 차감
3. 소득조사 (p.21)	2) 소득산정기준 ○ () “ 3 ” - : “ 3 ” - “ 3 : ” (1,47,10	변경 2) 소득산정기준 ○ () ‘ ()’ -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상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 퇴직사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3. 소득조사 (p.22)	1)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 (1) ‘ ,	변경 1)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1) () - (1) ‘ ,



구 분	2010년	2011년
3. 소득조사 (p.24)	2)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 , , / , .) () (),	삭제 2)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 (10)
3. 소득조사 (p.25)	다. 소득 유형별 산정방법 1) ○ (37) ※ 노인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중에 있는 경우 65세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37만원을 공제 ○ : 1 ()	변경 다. 소득 유형별 산정방법 1) ○ (40)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중에 있는 경우 만65세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0만원을 공제 ○ : 1 ()
3. 소득조사 (p.25)	2) 사업소득 ○ 19 197 ○ - (. . .) .	변경 2) 사업소득 ○ 19 () ○ - (. . .) .



구 분	2010년	2011년
		-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소득조사 (p.26)	○ , (13)	변경 ○ (15)
4. 일반재산 조사 (p.30)	3) () ○ 0.95 , , .	변경 2) () ○ [redacted] [redacted] 0.95 [redacted] , .
4. 일반재산 조사 (p.30)	1) 일반재산 ○ (180 1 ~3) - , , , , [redacted] [redacted]	변경 1) 일반재산 ○ (104 1 ~3) - , , , [redacted] [redacted] [redacted]

구 분	2010년	2011년				
4. 일반재산 조사 (p.33)	○ _____ ① _____ - () - ② _____	변경 ○ _____ (_____) ① _____ - , , ② _____ - , , ③ _____				
4. 일반재산 조사 (p.34)	○ () ② ● : 50% - : 50% - : 50% 6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08년 8월 개정되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6천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부채 인정상한을 6천만원으로 조정한 것임.	변경 ○ () ② - : 50% <table><tr><td>○ 50%</td></tr><tr><td>○ G4C ()</td></tr><tr><td>○「 e 」</td></tr><tr><td>() 50%</td></tr></table>	○ 50%	○ G4C ()	○「 e 」	() 50%
○ 50%						
○ G4C ()						
○「 e 」						
() 50%						



구 분	2010년	2011년						
	③ ()	<table><tr><td></td><td>○ 50% 7 5</td></tr><tr><td></td><td>○ - ○ () 50% 7 5</td></tr></table> <table><tr><td>()</td><td>○ 50% 7 5 ○ 2 50% 7 5</td></tr></table>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10.7.21)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7천5백만원 :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이 액수를 준용하여 부채인정상한을 7천5백만원으로 조정.		○ 50% 7 5		○ - ○ () 50% 7 5	()	○ 50% 7 5 ○ 2 50% 7 5
	○ 50% 7 5							
	○ - ○ () 50% 7 5							
()	○ 50% 7 5 ○ 2 50% 7 5							
4. 일반재산 조사 (p.35)	④ - 50% 6	변경 ④ - 50% 7 5						

구 분	2010년	2011년
	• 50%	• 50%
4. 일반재산 조사 (p.39)	) () ②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율(0.95)	변경 (2) () ② ○ , () ○ (0.95) , (100%)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율(0.95)
4. 일반재산 조사 (p.46)	3) 기타(증여)재산) ○ 3 1 1 ~6 (,) , ()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법원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변경 3) 기타(증여)재산) ○ 3 1 1 ~ 7 (,) , ()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장례비, 혼례비



구 분	2010년	2011년
		(중략) - 「 e 」 : : ‘ - () ’ : - : :
4. 일반재산 조사 (p.46)	3) ())	추가 3) ()) () ○ : 3 : - : : : - , : :
4. 일반재산 조사 (p.47)	(2) ① - , (), ,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변경 (2) () ○ ① , , , - , (), , , , ,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 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구 분	2010년	2011년
4. 일반재산 조사 (p.47)	④ - , _____ _____	변경 ④ -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일반재산 조사 (p.48)	(3) - _____ _____ * 월인정액 : 노인단독 100만원, 노인부부 16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시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변경 ○ - _____ (_____ , _____) _____ * 기초노령연금 감액대상자의 경우도 자연적 소비금액 적용 산정 * 자연적 소비금액(월인정액) :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120%(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계산)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시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5. 금융재산 조사 (p.49)	2) 적용기준 ○ - ()	추가 2) 적용기준 ○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구 분	2010년	2011년
5. 금융재산 조사 (p.53)	2)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 e 」 () ○ () 6 * _____ * 금융조회 결과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 함으로써 금융재산 해지 유인 최소화 - _____ _____ 6 _____ • _____ 6 _____ 2 ※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신청(접수)일로 부터 2개월 이전 월의 말일 기준으로 금융재산 조회 ○ () - () - () ○ _____ ()	변경 2)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 e 」 () ○ _____ () _____ ○ () - () - ()
5. 금융재산 조사 (p.53)	라. 금융재산 일제조사) 50% ○ : 2) 70%	변경 라. 금융재산 일제조사 ○ _____ _____ _____ - 50%



구 분	2010년	2011년
	○ : 1))) ○ : 1 - 25% ~50% - 50% ~ 70% ※ 시군구에서 별도로 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은 주기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조회가능	- 70%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		
5. 연금의 지급 (p.62)	가. 연금지급 방식 () 2) ○ . . . - ①) - ②) _____, 3	추가 가. 연금지급 방식 () 2) ○ . . . - (①) - (②) , 3



구 분	2010년	2011년
	• , • ,	• , • , - , (②) (②)
제4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1. 이의신청 (p.70)	다. 이의신청 절차 () 2) 이의신청서 송부 ○ . _____ _____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처리 ○ . . . _____ _____ _____ (_____)	변경 라. 이의신청 절차 () 3) 이의신청서 송부 ○ . _____ _____ 4) 심사·처리 ○ . . . _____ , ()

구 분	2010년	2011년
제5편 수급자 관리		
1. 수급자 사후 관리 (p.86)	(4) ○ ① () (,) G4C() () ※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추가 (3) () ○ () ③ 180 - () (,) G4C() () () ※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단, 해외체류 중(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신청일부터 기산
2. 부당이득 환수 (p.91)	2)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산정 (1) () ※ - -	변경 2)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산정 (1) () ○ - -

제도개요

1. 기초노령연금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1년 노인단독 740,000원, 노인부부 1,184,000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가액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 금융재산(가구당2천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5%
기타 기준		• 만 65세이상 노인

구 분		내 용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1.1~'11.3 적용기준)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6만원미만	66만원이상 ~68만원미만	68만원이상 ~70만원미만	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72만원이상 ~74만원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2.4만원미만	112.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6.4만원미만	116.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6.4만원미만	106.4만원이상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연금액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11.4월 변경되는 연금액은 추후 통보							

2. 업무처리절차

가. 개괄

구 분	①통합조사 요청	②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③즉시 처리	④사례관리	⑤시·군·구 접수
대상 사업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 포함) - 기초노령연금 - 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연금***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 - 장애아동재활치료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 아동인지능력향상 - 장애인활동보조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노인일자리사업 - 아동급식 - (일반수급자)시설입소 신청 등	- 장애인등록 - 각종발급업무 -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차량표지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 각종 감면 등	- 중점보호대상자 사례관리 ※ 읍면동 상담 후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서비스연계팀으로 바로 인계 또는 ②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팀으로 분배	- 긴급복지지원 - 입양아동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등
신 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상담, 대상선정	시·군·구
	↓	↓	↓	↓	↓
	시·군·구 요청		즉시처리	시·군·구 요청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	읍·면·동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서비스연계팀 욕구조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	사업팀 자격확인
	↓	↓	↓	↓	↓
	시·군·구 요청				
보장결정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결정, 통지		서비스연계팀 서비스계획	사업팀 결정, 통지
	↓	↓	↓	↓	↓
급여 서비스	사업팀 급여 지급	사업팀 서비스 제공		서비스연계팀 서비스 제공	사업팀 급여서비스 제공
	↓	↓	↓	↓	↓
변동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기초생활)	읍·면·동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연계팀 서비스 점검	통합조사관리팀**/사업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
보장중지	사업팀 급여 중지	사업팀 서비스 중지		서비스연계팀 종결처리	사업팀 급여중지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요청의뢰 후 자격판단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 조회 및 장애등급 심사를 읍·면·동에서 국민연금 공단에 위탁심사 의뢰하여 실시

나. 세부 업무처리 절차

1) 신규 신청자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4)

○

2)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1) ()

○

,

*

* 소득재산 변동사항 : 매월 초 알림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 : 매일 알림

(2) ()

○

.

-

,

(:

)

○

-

(.),

(,)

-

○

-

15

,

*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해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3) ()

○

(, ,)

15 24:00

(4) ()

○

○ (PDF) (e-)

(5) ()

○ (e-) 'e- ()

.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3)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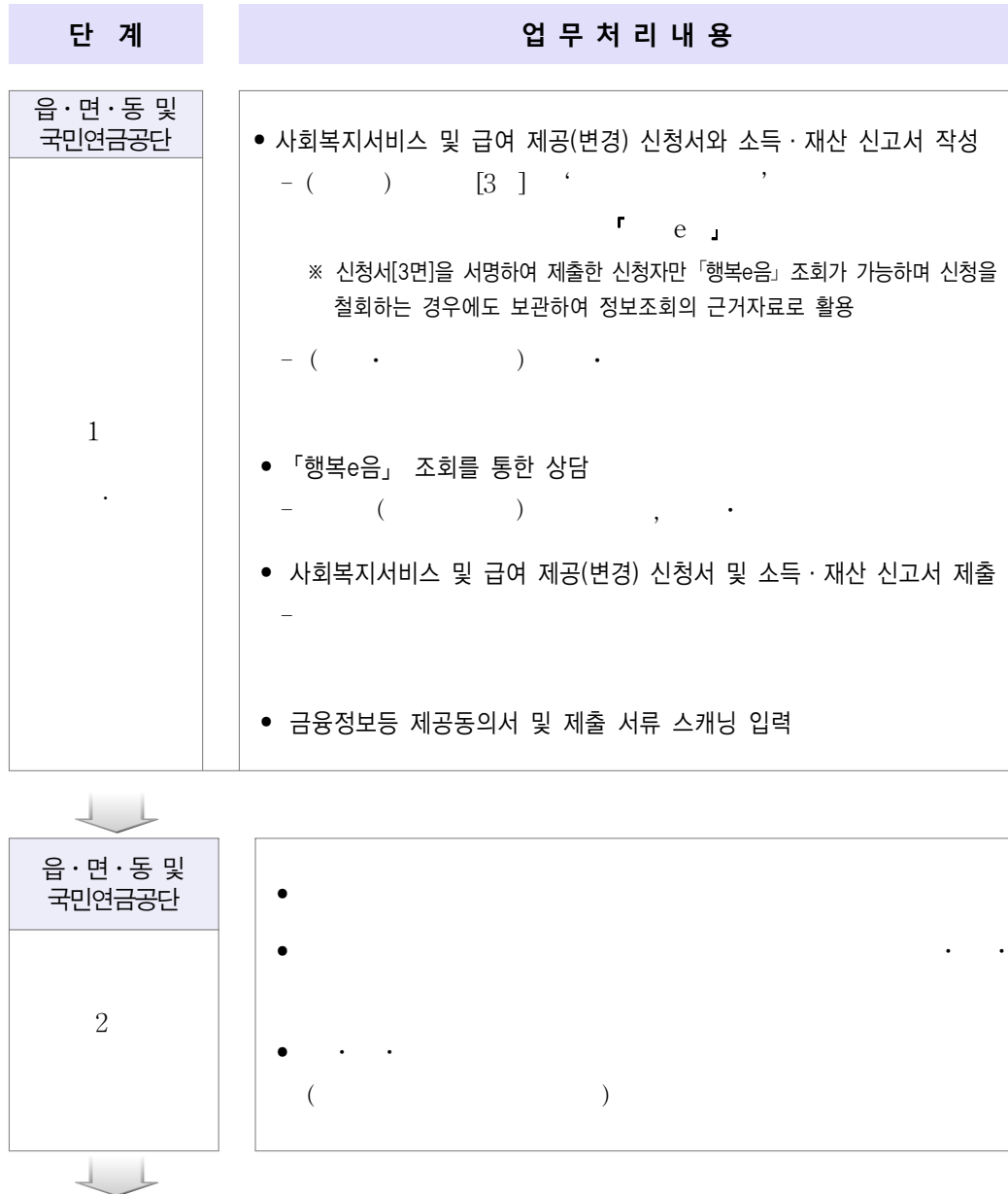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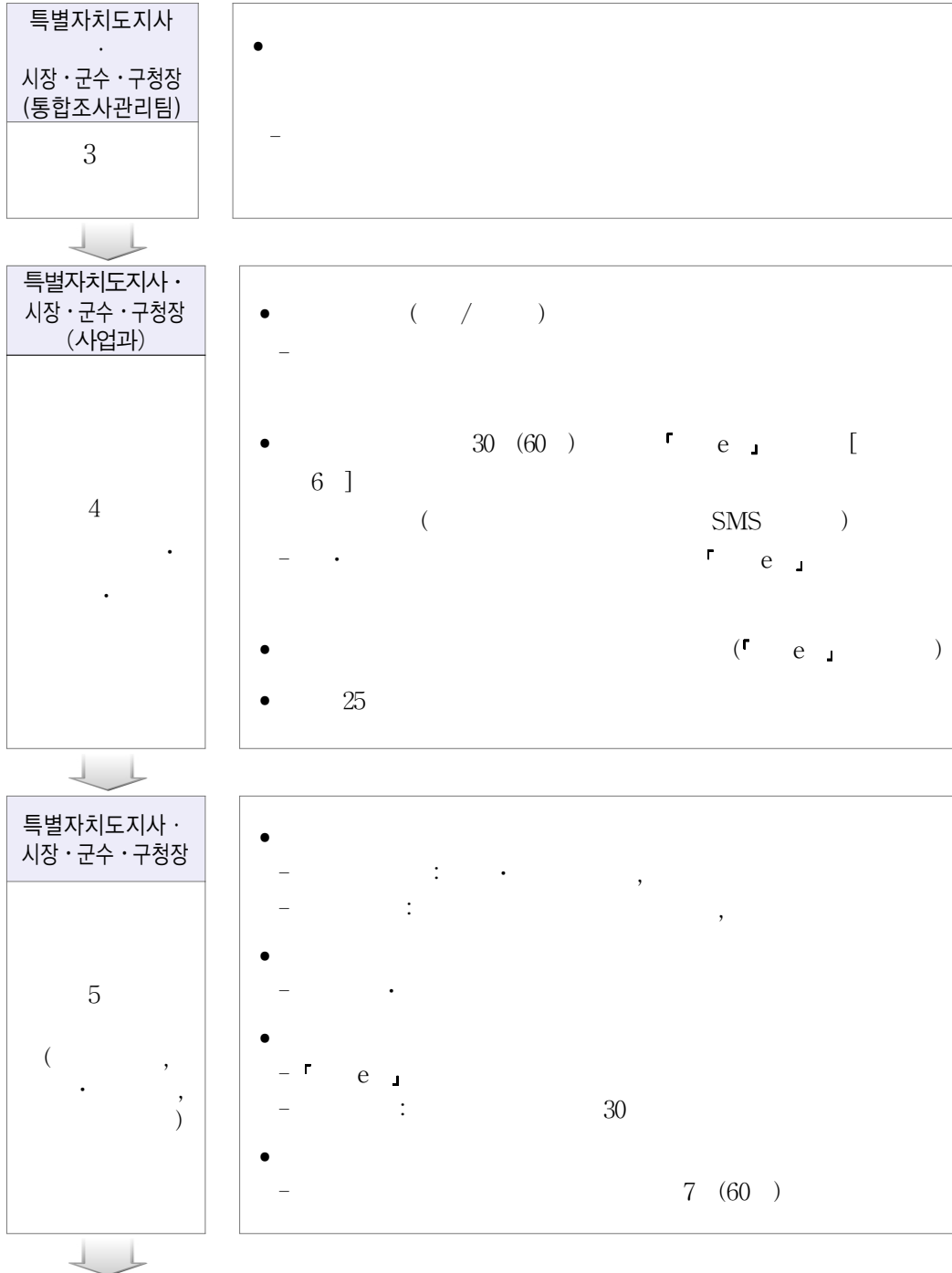
○ ()

(3) ()

(4) (/)

다. 본인 신청시 : 기초노령연금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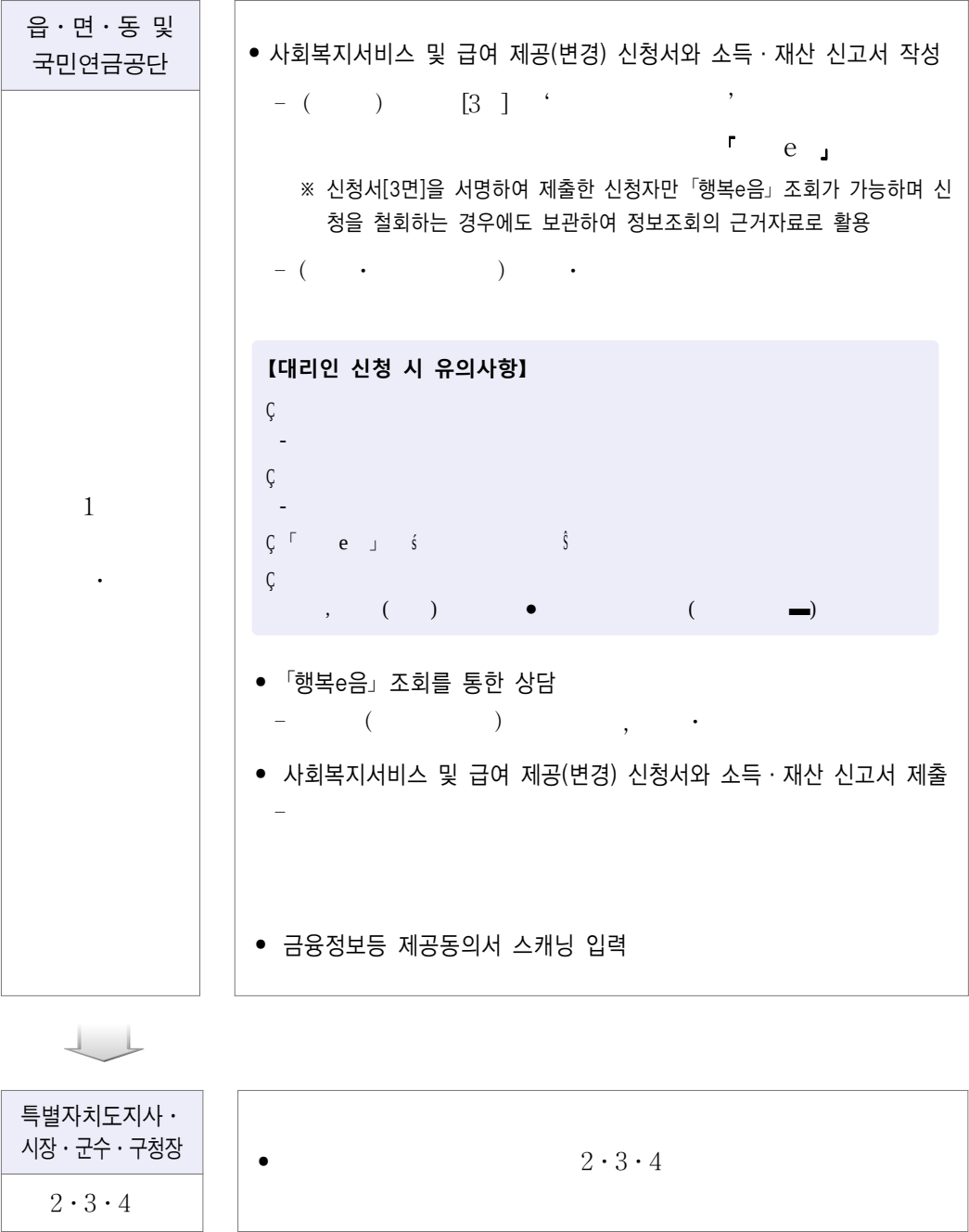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6	• • → → → → → → → • → → → →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4, 5, 6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4, 5, 6) • : . . . 90 • - .

라. 대리인 신청 시 : 기초노령연금 업무 흐름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6

•	5·6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4, 5, 6)	
•	:	, ,
•	:	· · ·
	90	

☞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신고 시 본인에게 유선으로 대리인과의 관계 및 위임 여부 등 반드시 확인

연금 지급 신청

제1편



1. 신청권자
2. 신청 구비 서류
3. 신청기관 및 기간
4. 신청서 작성·상담
5. 접 수
6. 신청관련 유의사항



1 신청권자

가. 연금수급희망자

○ 65

나. 대리인

○ (65)

- ()

-

○ , , , 1) :

- [3]

○ :

다. 관계공무원

○

- (,)

1) :

11

-

9

- 

가. 하

-

-

4. 0

-



2 신청 구비 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 1) () [1], .
[1 2] 1
※ 신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금 신청·접수 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는 노인 본인의 자필서명(또는 무인(지장)·도장 날인) 필수
- 2) () [1 3] 1
※ 부부노인 중 한명(만65세미만 배우자 포함)이 신청을 거부하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3) (, , ,)
※ 단, 신분증이 없는 신청자가 병원입원 또는 거동 불가능으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4) ()
- [3] 1
- (, , , ,)

나.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 1) : , . 1
- 2) : . , , 1
- 3) : 1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 G4C(행정정보공통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동의를 얻어 확인

□ 작성요령

- , ()
 - 1
 • (—)
 • , •
 ()
 ♣
 6 ♥
 1)
 2)

□ 주의사항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방법

(방법①) 각각의 주소지에 제출

- $$\begin{array}{ccccc} \bullet & & 1 & & (\quad , \quad \bullet \quad) \\ \bullet & & 1 & & (\quad , \quad \bullet \quad) \quad \blacktriangle \blacktriangle \\ (& & & & \\ & & & & 1 \\ & & & &) \end{array}$$

(방법②)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에 부부 모두 제출한 경우

-
「 e 」
-
- $\dot{Y}$, 「 e 」

□ 해외출국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방법

- 180 (FEDEX, DHL)

제1편
연금 지급 신청

○ (65) .

○ () 65 2 .

7

4 신청서 작성 · 상담

「 e 」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 서명(날인)

- () [1] .
- [1 2]
- .
- . [1 2] .
-
- [1] 3 *
- * 변동사항 신고의무,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및 부당이득환수, 정보조회 및 정보보유기간 등 안내
- ()

주의 신청서 작성 · 상담 시 필수 확인사항

□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의 구분

- 65 「 e 」

□ 사실(이)혼 관계 확인

- () (,) ,
'Y (h h h) '
- 6♥

□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및 지급신청 위임여부 등 반드시 유선확인

-
-



나.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상담

1) 신청자격 확인

○ : 65

○ .

○ () [3]

신청자격이 있는 자

ã (65 , 2♥) 65

ä - 1 ▶ ,

å . () () 2)

- ♥ () ,

- 2 31 2 ▶ , 3) 65

- 2 ,

1 . , § - §

2

ç ÿ § () § § - 65

è ' - - (-)

- - (-)

() '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1. 신청인
 2. 신청인 주소
 3.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4. 신청인 생년월일
 5. 신청인 성별
 6. 신청인 직업

1. 신청인
 2. 신청인 주소
 3.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4. 신청인 생년월일
 5. 신청인 성별
 6. 신청인 직업

2) : () , , . .

3)

4) : , 5 , 1 (27) (28)

5) : , 6

6) : (.) ()

**참고** | 외국인 등록(출입국 관리법 제31조)

ā 90
 90
 æ 1 3
 ♥ (ř š)
 < 2002.12.5 >

2) 연금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사항 등 상담

3) 연금 지급 계좌 신청(8)

○ , ,

○ , , 3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단, 금융기관, 우편관서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접 지급

○ 4

- (,)

- ()

- , 3

()



○

— “

○○○

,

○○○

□□□

.

”

.



주의

예외적인 경우 확인방법

ã

-

—

ä

-

(.

—)

-

1

—

å

, ‘

—

♥

-

()

‘

,

,

-

‘

—

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스캐닝 입력

○

[1 3]

—

()

「

e

」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5 접수

○ ()

-

○ 「 e 」
· ·

6 신청관련 유의사항

○ , 「 e 」
· ,

- 「 e 」 · ,
·

○ ()
([3] ‘ ,)

-

- 5 ,

주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시 유의사항



,

자 산 조 사 제 2 편



1. 자산조사의 개요
2. 자산조사의 종류
3. 소득조사
4. 일반재산 조사
5. 금융재산 조사



1 자산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일반원칙

1) 「 」 .

○ 「 」

○ , .

○ 「 」

(

)

2)

○ 「 」

(,)

나. 조사의 대상 및 범위

1) () . ,

○ ,

○ .

2) . ,

()

○ ‘ , , .

,



- 3) .
- *
- * 신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임
- 4) (,) .
- . .
- ,
- ※ 사실상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 (신청권) 없음
- 5)
-

다. 자료의 제출 요구

- 「 e 」 .
- , 「 e 」
- ,
- . .

참고 | 조사 및 자료징구의 근거(기초노령연금법)

- , , ,
- (7 1)
- , - ' ' ' ' ' ' (7 4)
- ' ' ' ' ' ' 20
- (23 1)



○ : 「 e 」

○ :

다. 연간조사

○

. . .

1

, . . .

○ ()

-

-

-

.

()

•

,

-

-

•

-

.

•

,

.

•

3 소득조사

가. 개 관

1) 소득 및 소득평가액의 의미

○ “ ” “ ” , “ ” ‘
 , * **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중증장애인수당(15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40만원)공제, 일용직(1년이하)근로소득금액 차감

○ ‘ ,
 - , (. . ,), (, ,),

2) 소득 산정기준

○ () ‘
 ()’
 - , (,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상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 퇴직사실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나. 소득의 종류 및 조사범위



1)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1)

○

-

-

○

-

※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므로, 우선 이를 확인한 후 제외

-

(1)

(2)

○

: (耕種業)⁷⁾, · , 8), 9)

7)

8)

9) () , ·

○ : (營林業)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 , ,)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 ()¹⁰⁾ ,

※ 다만, 상기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¹¹⁾, 간호수당¹²⁾,
무공영예수당¹³⁾

③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10) 6.25

11)

(, ,)

12) (1~2) .

13)

(4) (在韓)

— ‘ ’ , ‘ ’



다. 소득 유형별 산정방법

1) 근로소득

○ (40)

※ 노인부부로서 만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 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0만 원을 공제

○ : 1 *
14)

*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고서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 ,

○

2) 사업소득

○ 19

○

○ 「 e 」 ,

○

- (. . .)

.

-

○ (http://www.nts.go.kr) . ,
(.)

14) 「 e 」

- 4 3

- , 1



○

, () .

○

※ 법인 사업자는 근로소득 적용

3) 재산소득

(1)

○ 「 e 」

○ .

(2)

○ 「 e 」

(3)

○ 「 e 」

- , ,

- 1 , 2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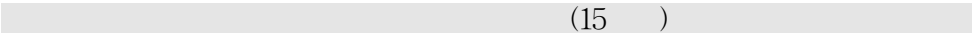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4) 공적이전소득

○ 「 e 」

○ , , , , , ,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15)

○

—

(前)

(「 e 」

)

—

4 일반재산 조사

가. 일반재산

● **□** , 65 ()

● ,

●

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 § 12

※ 재산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100 5 ,
15)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합산금액이며, 금융재산은 별도의 공제금액 (2,000만원)을 공제하여 산정함에 유의

○ :

구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10,800
중소도시	6,800
농어촌	5,800

15)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
 () (부부의 경우 상위도시 거주자 기준,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지역구분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예시 | 기본재산(주거공제)액 적용사례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

□ 사례 1

● 서울시 거주 , A — 8

$$\frac{7\%}{*} \quad 8 - 1\text{억}8\text{백만원} = 0 \quad (\text{0\%})$$

● 경기도 B시 , 1

$$\frac{7\%}{*} \quad (1 - 6\text{천}8\text{백만원}) \times 5\% \times 12 \times \frac{1}{6} = 133$$

● 충남 C군 , — 1 5

$$\frac{7\%}{*} \quad (1 - 5\text{천}8\text{백만원}) \times 5\% \times 12 \times \frac{1}{5} = 383$$

□ 사례 2

● 서울시 거주 (), A — 2
 B

$$\frac{7\%}{*} \quad (2 - 1\text{억}8\text{백만원}) \times 5\% \times 12 \times \frac{1}{2} =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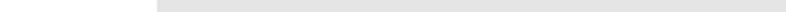
□ 사례 3

● 광주광역시 — 1 (),
 B — 1 2

$$\frac{7\%}{*} \quad (2 - 1\text{억}8\text{백만원}) \times 5\% \times 12 \times \frac{1}{2} = 466$$

● 강원도 A시 — 1 (),
 B — 5

$$\frac{7\%}{*} \quad (1 - 6\text{천}8\text{백만원}) \times 5\% \times 12 \times \frac{1}{5} = 341$$

○ 

○ , ,

[illegible]

1) 일반재산

○ , (104 1 ~ 3)

— , , , ,

‘ ’16)

17)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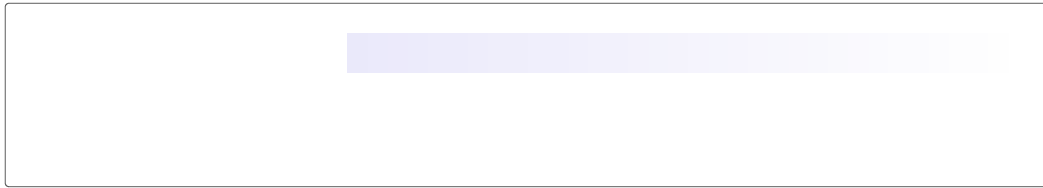
- , (104 4 5)
- . . ()
- (6 14 ~ 17)
- , , ,
- 18)(89 2)
- 「 」 19) ,
- 20) ‘
- ()’21) ,
- + + ()
- , (
-)
-
- (,)
- ,
- , .
- ()
- , (6 11 , 13)
-
- ‘ ,
- 18) , , , , ,
- 19) . : → () → →
- → . , → →
- 20) , → , →
- 21) :
- , ,



2) 자동차

○ 124 . ,

○ 「 」



3) 부채 산정방식

○
- (23), 24),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 단, 추후 채무 상환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토록 안내

예시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보증보험 대출금 및 공사 대출금

□ 보증보험 대출금

≤ ≤ ♥ -

23)

24) ‘ , , ‘ ,
(2007 7 12)
- , ()
- () (+ + +)

() 1 63 1
⇒

【1 -995 ()】× 5%/12 = 39

※ 대출잔액 = 주택연금 수령액 + 수수료 + 보증료가 포함된 값임

※ 주택연금액은 부채로 차감되므로 주택연금가입자가 유리

○

①

②

- : 50%

	○ 50% ○ G4C() ○ 「 e 」 () 50%
	○ 50% 7 5 ○ - ○ () 50% 7 5
()	○ 50% 7 5 ○ 2 50% 7 5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10.7.21)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7천5백만원 :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이 액수를 준용하여 부채 인정상한을 7천5백만원으로 조정

예시

구 분	주택 시가	공시가격	임대보증금	부채인정액
전세권등기	2.5억	1.6억	1.4억	8천만원
확정일자	2.5억	1.6억	1.4억	7천5백만원

주의 **대한주택공사 임대사업 관련 임대보증금 산정 방법**

□ 처리 원칙 :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처리 원칙 준용

- **50%** 7 5
- ㉠
- (1) A **1 5** (7)
- ⇒ A 7
- (2) A **1** (5)
- ⇒ A 5

④

-

50%

7 5

•

, 50%

4)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G4C**()

○ 2007 10 15 *

,

*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예 금융기관 대출금이 5천만원이 있어, 매월 20만원을 이자로 상환하는 경우 20만원은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 () , ,

-



주의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처리방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주의 | 주택 매각 후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 주택을 매각하여 변경신고(재신청)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전액 소비분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만큼은 기타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라.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1) 일반재산

(1) ,

①

○ (104 1) : 「 . 」

○ (6 4)

- (2 1 2) :

,

. . . .

- (6 4) :

, , , , , .

,

(

)

○ 25) : 「 」 2 1

-

()

②

○ (,)

- 「 e 」

- 「 e 」

(

26)

-

,

()

,

주의 상속 개시 후 상속 미등기 재산 산정방안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등기관행·상속협의 지연 등으로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

,

—

,

σ

ã

ä

()—

â

*

*

()

1 ,

(4.5)

· 3

1.5,

▲▲ 1

,

1

25)

26) 「 e 」

· ·

*

,

*

:

6 1

, 6 2

()



주의

자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 산정 방법



□ , , , 「 e 」 ,
-

○

- , : 「 e 」

○

- 「 e 」 , , (,)

-



주의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가액 산정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출 요청하여 가액산정

- -
- · - - - -
- -
- -

(2)

①

○

, (, ,)

②

- ,
()
- (0.95)
, (100%)
- = ° 27)(0.95)
- - ,
(6)
• 6 1
• 1

예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본을 신청인(신 임대인)이 제출한 경우

↑ 주의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자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처리방법

□ () ▶
(p.46)

27) : , 5%
-「 e 」 ,



③

○

-

,

○

- ()

()

- ()

‘ () ’

예시 |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적용예시

□ 변제(양도) 전

● A() — B()

▶

3 5

(2010 8 1)

B

⇒

,

▶

B()

,

5

□ 변제(양도)후

● A() — B()

▶

3 5

(2008 9 8)

B

⇒

,

▶

B()

5

,

▶

§

§

(3) .

① :

(104 4 5)

○

:

.

.

○

:

.

.

.



②

○

28)

$$\text{---} = \text{---} \cdot \text{---} \quad (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4)

① : , , (立木)

②

○

(5)

① : 6 14 17

○

: 「 . 」

○

: 「 」

○

: 「 . 」

○

: 「 . 」

②

○

, , , ,

28) : , 20.3% 70%
3.5 ()



(6)

①

○ 89 2

②

○

, (

)

- : 「 48

() ()

- :

()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 29)

- , .



주의 주택청약당첨권(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신청인이 해당 주택당첨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사업 완공으로 주택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 ,

□ 주택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 매매 또는 증여 관련 증빙자료 징구

29) .



(7)

①

○

②

○

(,)

(8)

①

○

- : , , ,

- : , , ,

②

○

,

2) 자동차

(1)

○

124

- () , , , ,

(2)

○

「

e 30)

30) . . . ()

(3)

- (,) 「 e 」
- . ‘ , ’
- ,

주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관련

□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는 자동차 유형

- $\hat{Y}$, , 4.19 , -
- $\hat{Y}$ 「 e 」 -
- () ,

□ 구체적 적용례

- < $\hat{a}$ 1 3 (▲ 1 4)
- $\hat{a}$ 72 64 ()
- < $\hat{a}$ 2 1 -
- ,

□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처리기준

- ,
- - ▲▲ ▲▲

3) 기타(증여)재산

(1)

○ 3 1 1 ~ 7 (,)
 , * , ** ,
 ‘ () ’

*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다른
 세금 납부금, 장례비, 혼례비

() - = - - (- + +)

- 「 e 」 : ‘ -
 () ’

- :

○ 2007 10 15 () ‘ () ’

* 2007년 10월 14일 이전 매각되거나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매각대금 및 차액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을
 하지 않음

-
 , ()

○ 3 ,

-
 ,
 - ,
 -

○

(2)

○

- :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

*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

○

① , ,

- , (), , ,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 세금영수증은 불인정)

②

- ,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 ,
(, .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 ,
()



⑤

- (,)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 (, ,)

* 기초노령연금 감액대상자의 경우도 자연적 소비금액 적용 산정

*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³¹⁾의 120%

(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계산)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예시 | 공매 및 공탁

□ 공매

● A , 8
⇒ , 8

□ 공탁

● A (- 1)
⇒ - ,

31) 2011 (2010-65 , 2010.8.31)

	3	4
(/)	1,173,121	1,439,413



5 금융재산 조사

가. 개 관

• **—** () , 65

• ()

제2편
자
산
조
사

1) 조사대상

○

2) 적용기준

○

—

• , •

※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손자가 미성년이라 하여 노인 본인 이름으로 예금한 경우도
예금주명 기준으로 판단

—

, , ,

‘ ’32)

3) 소득환산방법 : 5%

예시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 인정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노인의 재산에서 제외

1. .
2. () ‘
3. ()

1) 금융재산

참고 |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2) \quad \left(\begin{array}{ccc} 1 & 4 & 1 \end{array} \right)$$

○ :

— ,

※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계좌(해약환급금)는 산정하지 않음

— ()

※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자에게 납입금이 환급됨

50 ●●

-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3)
- ,
- , 2,000

2)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 ,

구분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부채 인정	○ 개인대출 ○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 보험회사의 대출(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약관대출금) 모두 포함 ○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대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부채 불인정	○ 기업대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 ○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설정액	○ 카드로(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이 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수시입출금 계좌 중 대출이 가능한 계좌에 의하여 이루어짐. 또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대출수요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설·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평균잔액 산정 시 일정부분 (-) 금액이 반영되는 점 감안하여 대출로 불인정

* 또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부채잔액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제외

* 다만, 일반대출을 받아 한도대출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금융부채로 반영



3) 유의사항

- ,
34)
- ,
()
- (→) ‘ () ’

다. 조사방법

-
-

1) 금융정보 등 조회에 의한 조사

- : 2
-
- 10
- ,
(2,000)
-
- ‘ ,
→ . . 「 e 」
→
→ 「 e 」

34) ,

2)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 적용

○ 「 e 」 ()

○ ()

○

—

35)

—

라. 금융재산 일제조사

○

—

50%

—

70%

35) , ,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

제 3 편



1. 수급자 선정
2. 연금액
3. 연금액 감액
4. 지급결정 및 통지
5. 연금의 지급
6. 미지급 연금
7. 수급권의 보호



1 수급자 선정

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hat{Y} = [(\text{소득} - \text{공제액}) + (\text{재산소득} - 2000) - \text{기타소득}] \times \text{세율} \quad \text{§ 12}$$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나.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구 분	노인단독 ³⁶⁾	노인부부 ³⁷⁾
선정기준액	740,000	1,184,000

다.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2 연금액

○ 「노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제1호 (A : 3월) 100일 5

○ 4월 3일, 2010년 4월 ~ 2011년 3월 90,000 (144,000), 2011년 4월 ~ 2012년 3월 91,000 (145,600)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 A값 및 연금액 추계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값(만원)	179	182	187	192	198
연금액(만원)	9.0	9.1	9.4	9.7	9.9

※ 2011년은 이후 A값 및 연금액 추계는 변동 가능

36) : 65

37) : 65 ()

3 연금액 감액

가. 감액 목적

- ()
- (5 1 , 5 1 2)
- ()
- 20% (5 2)

나. 1인 수급

1) 초과분 감액 대상자

- [+] >

2) 내 용

- 20,000

(1)

소득인정액		66만원미만	66만원이상 ~68만원미만	68만원이상 ~70만원미만	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72만원이상 ~7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1.1~'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4~'12.3월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2) 1

소득인정액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2.4만원미만	112.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6.4만원미만	116.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1.1~'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4~'12.3월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다. 2인 수급

1) 부부감액

○

-

20%

○

-

= (× 80%) × 2

2) 초과분 감액

○

40,000

3)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6.4만원미만	106.4만원이상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1.1~'11.3월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1.4~'12.3월	145,6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예시 | 기초노령연금 감액 지급 방법

ã	—		
-	690	50	60
ä	— 1		
-	1,104	80	80
å	— 2		
-	1,054	130	144

4 지급결정 및 통지

가. 지급결정

1) 연금지급 여부 결정

- 「
e 」
()

※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미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 「 e 」
- 「 e 」 ‘ ’ [7] ‘
’ [8 (-3)] (‘ ,)

2) 연금액 결정

- :
○ :

나. 결정통지

1) 통지방법

- ,
, ,
[6] ()
)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신청인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발송전에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필로 신청취하서(임의서식)를 작성토록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2) 통지기한

- 30 ,
60 ()

5 연금의 지급

가. 연금지급 방식

1) 연금지급 기준

- ☐ - , 65
- ☐ -
- ☐ - ,
- ☐ 1 2 , 2

주의 수급권 포기

- ☐ - ()

주의 주민등록주소자

- (,) ,

주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15 ()
- 16 ()



2) 지급방법

-
-
- (①)
- (②) , , 3
- ,
- ,
- , (②)
- (②)

3) 연금 지급일

- 25 (.)

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 1)

예시 서울특별시 A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B시에 소재하는 경우				
ã	—	A	A	—
ã	—	B	B	—

- 2)



예시 | 경상북도 A시와 대전광역시 B구간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시설입소 협약을 체결하여 A시 노인이 B시 시설에 입소하고, A시 노인이 주소지를 시설소재지 B로 변경하여도 A시에서 연금 지급하기로 협약(MOU)체결

주 A

B

A

연

(MOU)

—

,

▶

—

6 미지급 연금

가. 지급사유 및 청구권자

1) 미지급 연금 지급사유

○

—

,

—

2) 청구권자

○

(,)

—

(1),

(2),

(3)

—

2



○

—

,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인정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됨

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1) 청구절차

○

.

(

.

)

○

—

[9] 1

—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1

※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선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임의서식) 징구

—

(

,

,

,

,

)

—

•

[3] 1

•

(

,

,

,

,

)

2) 결정통지

- 7 , ,

3) 지급대상 및 방법

- 2
-
-
-

7 수급권의 보호

-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 4 편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1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 15 1

- ,

나. 이의신청 주체 및 신청대상 처분

○

- , ()

○

- , () , ,)

다. 이의신청 기한

○ 38) 90 . , 39)

60

라. 이의신청 절차

1) 개요

○

(.)

38)

39) ,



2) 제출서류

- [12]
- (, , ,)
- ()
- [3] 1
- (, , , ,)

※ 배우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3) 이의신청서 송부

- .

4) 심사·처리

- . . . ,
- ()

5) 결과통보

- 7 40), 41), 42)
- [12]

※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함

- ,
- () . . .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 () . ,
- ()

40)

41)

42)



바.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

90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개요

1)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

2) 행정심판기관

○ - . . . ,

○ - . . . , .

나.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 대상적격 - 처분이나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 ,

2)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 , . ,



○ () .
 , ,

○ ()

○ ()

3)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 (. . .)
 ()
 - ,

4)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 90
 - 180 . ,
 ○ , , ,
 90
 14 . ,
 30

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6
 (6 , 23 1)
 ○ (28)

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4조)

○ ()

,

○ ()

○ ()

○ ()

○ ()

-

-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재결에 대한 불복

○

수급자 관리

제 5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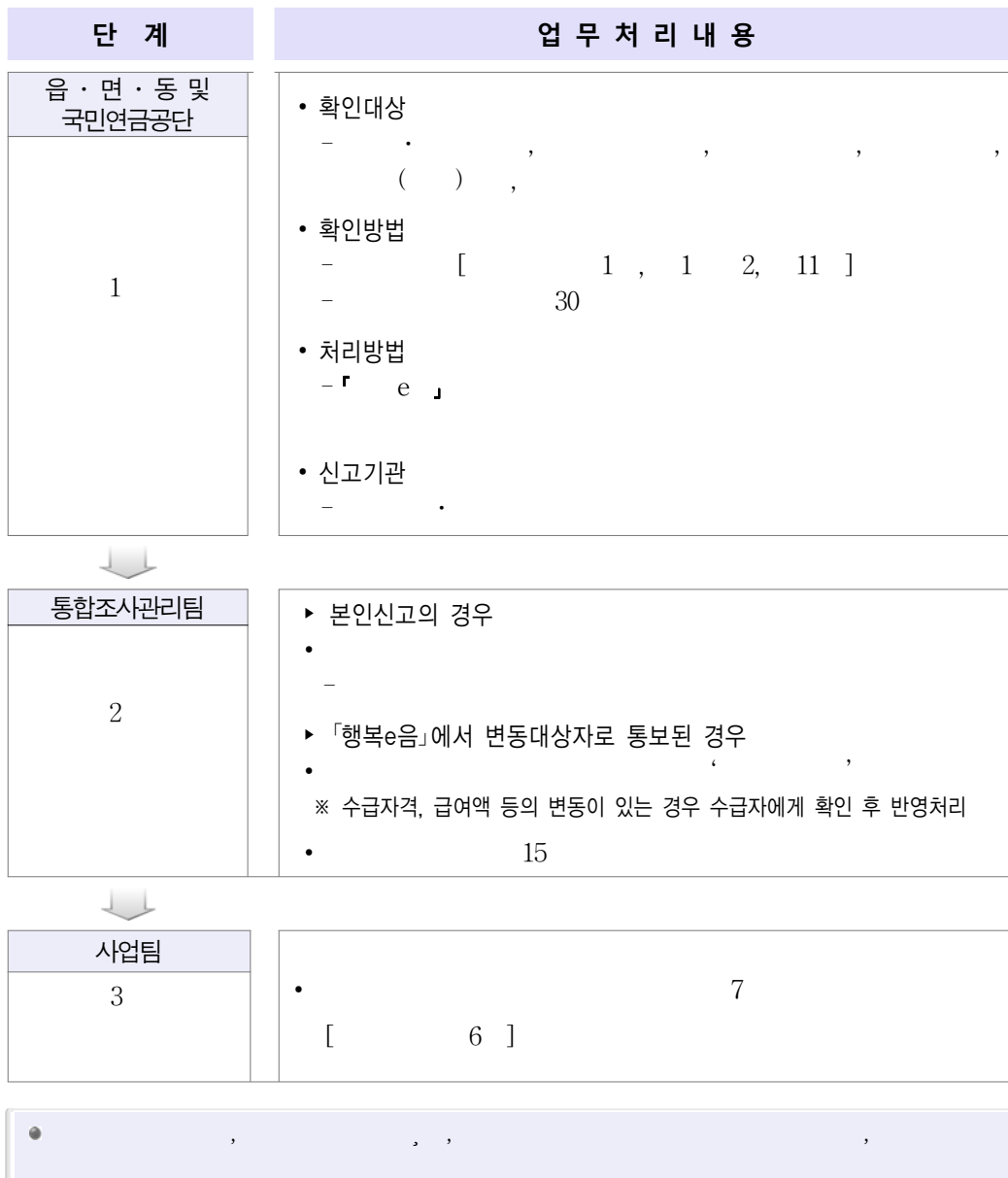


1. 수급자 사후관리
2. 부당이득환수
3. 부당수급자 관리
4.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1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자격 변동사항 처리 업무 흐름도



가. 변동사항 관리

1) 개요

- , ,
- , . 「 e 」
- ,

2) 확인대상

-
- ,
- .
-

3) 확인방법

- : ,
- : 「 e 」 .
- :

나.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 본인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

-
- () . (.), , , () ,
- , , ,

※ 주소지 변경 사항은 별도 변경신고 없이 「행복e음」으로 처리

- (.) , . ,

-
-



(2)

- 30 .
- . ()
- [1]
-
- () [1], .
- [1 2] 1
- (, , ,)
-
- ()
- [3] 1
- (, , , ,)

※ 배우자가 수급권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3)

- :
- . :
- :

(4)

- . . 7
- [6] (, .
- ()
- 60
-)

2) 공적자료 갱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

- :

- . : 「 e 」 ()

3) 변동 유형별 처리방법

(1)

○

- . (.),

○

-

○

-

-

예시

● (1)

- 「 e 」

- ▲▲ 2

- 2

● (2) 2

- 「 e 」

- 2

- 2

● (3)

- 2

- 2



○

① . (.)

- . .

- . .

②

- 65

- .

예시**□ 주민등록번호(연령) 상향 조정 시**

● 2011 1 15 , 2011 8 25 ()
 1937 4 1 生(74) ℓ 1935 4 1 生(76)
 ⇒ 65 (2011 1 1)

□ 주민등록번호(연령) 하향 조정 시

● 2011 1 15 , 2011 8 25 ()
 1946 3 10 生(65) ℓ 1948 3 10 生(63)
 ⇒ 2011 3 18 ,

주의 | 주소지 변경**□ 주소지 변경은 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 , , .

전 출	전 입
- - (*) - , 2 ()	-

(2)

- - , . () ,
- -
- - ()
- ①

구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 ○
2 1		○ 2 ○ → · · → →
1		○ → () → · · → →

-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변경 신고는 불필요
-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은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 적용



② , ()

구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 ○
2 1		○ 2 ○ → . . → →
1		○ → () → . . → →

③ (.)

- : . ,
- :
- ()
- () 「 e 」
- :
- ()
- () ()
-
-
- .
- .

(3) ()

 주의 **(공통사항) 연금의 지급·일시 정지**

● () , , 180 , —

● () , () ▶ — 1

● () () — , .

- ()
- () ,
- ()
- 180 , , .
-

 주의 **정지기간**

● () — —

- . : ()
- 180 : 180
- :
- . : () 1
- ()
-
-
-



①

- () ()
- ()
- ‘ () ’ ‘ , ’
- ※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출소자 중 그 사유가 ‘형기만료’ 또는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 ‘집행정지’인 경우에는 형 집행 기간 만료일까지 지급정지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형 확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형 확정일로 함(형사소송법 제358조)

- ‘ , ’ ‘ , ’
- ‘ , ’ , .

주의 **신원조회 회보서상의 ‘해당사항 없음’의 의미**

- 신원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된 것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유예 기간 경과 또는 사면·복권된 경우 기록을 삭제하게 되어 있기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또는 사면·복권장을 징구하여 지급정지 여부 확인·처리

- ,
- .
- ※ (5)
1. .
 2. .
 5. .

③ 180

- () (,
) G4C()
()

※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180일을 의미함

※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단, 해외체류 중(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신청일부터 기산

예시 |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처리

□ 홍길순(1945년 10월 4일생)은 2010년 10월 25일자로 연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15일 수급자로 결정됨

- (1) 2011 1 1 , 2011 8 5 「 e 」
- 2011 1 2 180 6 30
7
(7)
- (2) 2010 9 7 2011 5 7
- 2010 10 25 180 2011 4 22
5 , 6 ♥
- (3) 2011 3 1 , 2011 8 30
- 2011 3 2 180 ♂ 8 28 ,
180 ♂ ▶

④ . § X O E

 주의 | **수급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 ‘*ℓ* . . . *ℓ*’

- 

-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 및 분야를 선정하고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건전성 유지

○ 「 e 」 ()

() (65)

2



(2)

○ . . .
 . . .

(3)

○ , , ,

○
- :
- . :



2 부당이득 환수

부당이득 환수 처리 업무 흐름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행

단 계	업 무 처 리 내 용
제1단계 부당이득확인 및 결정	• , • .
제2단계 납부통지	• , , , • • 30
제3단계 납부독촉	• 30 •
제4단계 압류	• .
제5단계 경매처분	•
제6단계 징수금액처리	• ()
제7단계 종결	•

가. 부당이득 환수의 개요

1) 부당이득의 범위

○ ,

2) 부당이득의 확인 및 결정기관

○ . . .

3)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
○ ,

나. 부당이득 환수 결정

1) 부당이득 환수대상자 결정기준

(1)

- - , , , , 180 ,
 , , .
- - . . .
-
-

※ 수급자를 대리하여 배우자(또는 부양의무자 등)가 신청하여 수급중인 경우 연금을 수급한 당사자에게 환수



(2)

○

—

, .

14

○

—

, .

14

○

—

14

2)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산정

(1)

○

. . .

○

1

,

○

—

—



예시 | 환수금액 산정

□ 노인부부(A, B)의 부당이득금 지급 기간 : 2010년 1월 ~ 3월(3개월)

□ 총 지급액 : 422,400원(140,800원 × 3개월), 각 211,200원

● ▲ ▲ ?
⇒ 2010 1 13 ▲ ▲ 211,200 211,000
Y 1

(2)

○ . . .
「 e 」 .

다.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1) 납부통지

○ . . . 10
, , ,
,

○ ,
15

○ 5 , 30
, , ,
[11]
— “
”



○

· ,

2) 분할납부

○

· · ·

,

3) 독촉

○

10

30

,

(,)

4) 징수금액의 처리

○

,

(· ·)

라. 결손처분

1) 결손처분 대상

○

2) 결손처분 기준

○

-

(

)

5

○

-



-

-

- , ,

-

,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3) 결손처분 방법

○ . . .

29 2

‘ , .

- 7 「 e 」

.

마. 소멸시효

○ . . .

5

-



3 부당수급자 관리

가.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 업무 흐름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행

단 계	업 무 처 리 내 용
제1단계 위반행위 여부 확인·결정	• . • . • . • .
제2단계 과태료부과 통지	• , , • 10 ()
제3단계 압류	• .
제4단계 경매처분	•
제5단계 징수금액처리	• (),
제6단계 종결	•

※ 이의신청

- 1) 과태료 처분에 불복 시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제기 가능
- 2)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사실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1) 위반행위 확인

- ☐ .
- ☐ .
- ☐

2) 과태료 부과 결정

(1)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200,000원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100,000원

※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 ☐ . . . 10
 , ,
 ,

- ☐ . . .
 ,
 15

(3)

- ☐
 60

(4)

- ☐ 『 』 『 』 ,



나. 벌칙

- 1
500
- , 6
(60)
- 5
3
- 3
2
- , .
.

4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 , , 「 e 」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 . . 「 e 」
 . , 「 e 」

○
 - [8 (-1 -3)]⁴³⁾
 - [8]⁴⁴⁾
 -

2) 수급자의 현황보고

○ . . .
 -
 - : ,
 - :
 ○ 「 e 」

43) :

44) : . . .

개인정보보호 제6편



1. 일반규정
2.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3.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1 일반 규정

가. 관련 법령

- ,
- ,

나. 정보보호 주체

- . ()

다. 보호대상 정보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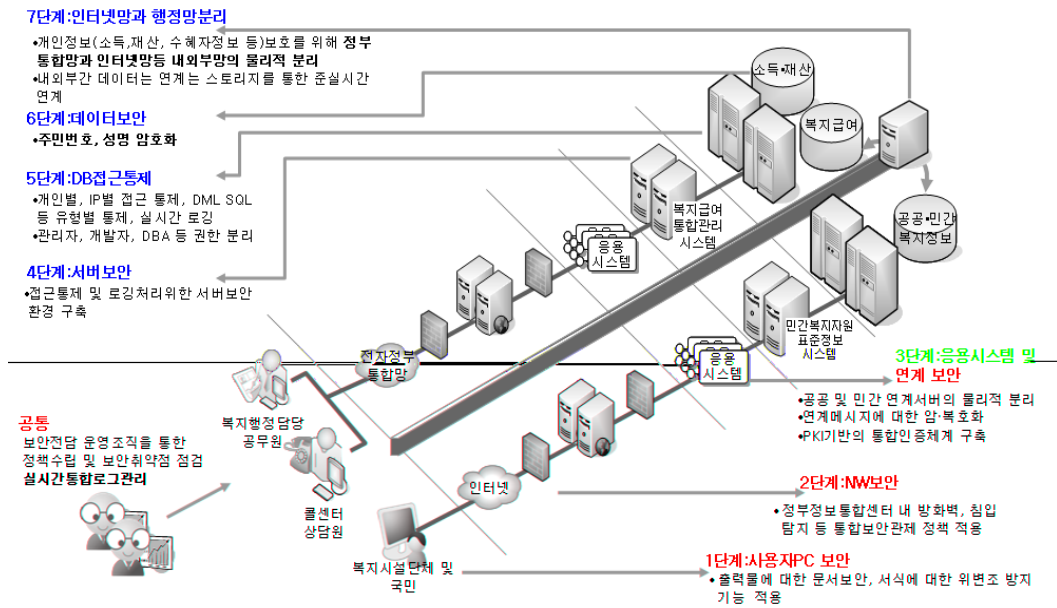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라. 개인정보 위험 요인

- : . ,
- : . ,

2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가. 물리적 · 기술적 보안정책





○ DB

- , DB
- DB
- ,

○

- 「 e 」 (Secure OS) ,
- ,
- ,
- ,

○

-
-

○

- 1 () , DB Zone

○ PC

-
- ,
- ,
- , .

나. 관리적 보안 정책

-
- , ,



-

○

- 「 e 」

- , 「 e 」
- , ,

- ()

-
-
- 3

○

- 3 ,

다. 법·제도적 정책

○ (33 2 3)

- (“ ”)

(“ ”)

- . . (“ ”)

-

, , ,

○ (33 8)

-

5 ,



○ (52 2)

- , , ,

-

○

- 53 2

• 33 3

3

1

(

5

3

,

3

2

)

-

53

3

•

「

e

」

•

•

•

•

3

3

-

7

2,

22

1

2

•

(7 2 6)

• 7 2 6

5

3

• 7 2 6

3

2

3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가. 배경

- 「 e 」 .
 ,

- *

※ 미국CSI/FBI 보고서(' 02)에 따르면 외부 해커에 의한 유출사고는 20%인 반면, 고의적 유출사고가 80%나 됨

나. 내용

-

※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다.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 - ,
 .

- - 「 e 」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상 사례는 정교화

- -

라. 모니터링 후속 조치

-
-
-

서 식 제 7 편



1)				
2)	:	①	1	, ② 1
3)	:			
4)	:		8	, 4

●● 1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	① ④	(/)	② ⑤	(☐)	③ ⑥	()
☐ .	☐		☐	()	☐	
☐	☐		① ⑤	② ⑥	③ ⑦	④ ⑧ ()
☐	☐	()	☐	()		
☐	☐	☐	☐	(*)2010		()
☐	☐	(☐)	☐	① ②	③	()
☐	☐	☐	☐	☐	☐	()
☐	☐	(☐)	☐	()		
☐ ()	☐	☐	☐	☐	☐	()
☐	☐	. (kg)	☐	.	☐	5) ()
☐ ()	☐	TV (:)	☐	(:)		
	☐	(☐ KT ☐ SK ☐ LG)				
						() ⁶⁾
					*	
	☐	(E-mail)	☐	(SMS)	☐	()

() () : () () .		
, , . , ,	($\begin{matrix} 1 & 2 \\ 1 & 3 \end{matrix}$)	1. (,) (,) 2. () 3. . (,) 4. () 5. $1 ()$ 6. $()$ - $\frac{1}{4}$: - $\frac{2}{4}$: () - 7. (, ,) 8. TV , , () 9. - , , ,
(, , , , 7)) ()	(1 2)	
()	4 () (1)	

7) 3 1 5 7 9

210mm×297mm(60g/m²())

1. 30~60 14 , 30 15 , 20 30~60 , 30~60 ,
- 2-1. ① 37 ② ③ ④ ⑤
- 2-2. ② 9 ③ 30 ①
3. 29 1 16 1 30 1
17 1 10 14
180 15 2
4. 180 44 1 , 46 2 , 12 ,
5. 54 3 4 , 25 3 49 , 22 3 , 500
6. 33 3 3 , 22 23 , 7 ,
9 8 , 11 4
20 , 58 2 , 23 1 , 27
7. (□ , □)
8. 6 2
9. 38 1 1 2 “
- * () ,
10. ()
11. ()

33 3

33 8 5

() : _____ ()



[1 2]

소득·재산 신고서						
1)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 () ☐ r () ☐ 50% ()					
. . . () : ()						

1) 1 () . . .
 2) : . . .
 3) : . . .

210mm×297mm(60g/㎡())



[1 3] < 2011.1.1 >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		-	

2.

()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 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1)

2)

3)

3.

4.

5.

※

:

()

)

210mm×297mm[

60g/㎡(

)]

[illegible]

116 ●●

$$[\quad]$$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		
					()
()			()		
					()
☐ ☐ ☐					

210mm×297mm 60g/m²()

210mm×297mm(60g/m²())

[2]

□	□	□	□	1. 2.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20px;"></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colspan="5"></td> <td style="height: 20px;"></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colspan="5"></td> <td style="height: 20px;"></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colspan="5"></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3. , , , .																															
4. , .																															
			□	/ . /																											
			1.																												
			2.	, , , . ,																											
			3.	,																											
			□																												
			1.	() .																											
			2.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25%; height: 20px;"></td> <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3.	(25 65)																											
			4.	30																											
			-	: , , ,																											
			-	: ,																											
			-	: , , ,																											
			5.	, 180 ,																											
			□																												
			1.																												
			2.	, , , . ,																											
			3.	,																											

210mm×297mm(60g/㎡())

☐	☐ □ ()	1. () 2. : ※ 3. () - , (2 ,) 1 ~ 10 : (1) 15 ~ 27 - . : 2 - 4. () 5. ,
☐		□ □ () □ 1. . 2. . , , , , . , .
☐	. . .	
☐		□ □ □ □ ()
☐		□ □ □ r J □ □ □ (180)
☐		□ □ □ □ ()
☐		□ □ □ □ ()
☐		□ □ □ □ ()

	※
1.	()
2.	
1)	60
2)	60
3)	90
4)	90
5)	(, 60)
6)	(, 60)
7)	60
8)	20
9)	18

제7편
서
식

[1면]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전화 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보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보장 신청	☐ 기초생활 보장 ☐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아동·청소년 ☐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표기함																
구 분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 질병)	근로능력 유무·사유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 학년반)	자격증 종 류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직업관련 구분	직업	취 업 상 태	고용 형태	직장명	전화 번호	보장상태 의료 보장 결정	
가구원	의																
	의																
	의																
	의																
	의																
	의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 수	직업	소 득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	월평균 지원금	부양능력 판 정 사 유				
	의																
	의																
	의																
조사 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 군복무 () ☐ 해외이주 () ☐ 복역 () ☐ 보장시설수급자 () ☐ 행방불명·가출·실종 () ☐ 부양기피·거부 () ☐ 기타 ()														
																부양능력자 유 무	☐ 있음 ☐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 123

[3면]

주거실태	주거유형	☐ 자가(천원) ☐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관리대상 등재자) ☐ 전세주택임차 ☐ 부분주택임차 ☐ 기타 자가 인정 ☐ 전세(보증금 천원) ☐ 월세(월 천원) ☐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 영구임대(천원) ☐ 가경위탁 ☐ 보강기관 제공주거 ☐ 그룹홈 ☐ 기타(음파, 비닐하우스 등)																	
	건축상태	☐ 양호 ☐ 개축 ☐ 건립보수 ☐ 편의토목보수 ☐ 도배 등 환경개선 ☐ 기타()																	
	주거급여판정	☐ 월세임차료 ☐ 유직수선비(현금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주거안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 가족생활 ☐ 사회적 관계 ☐ 경제																	
	가구특구	☐ 노인 및 직업 ☐ 생활환경 및 편의보장 ☐ 기타()																	
보장결정	보장구분	소득 소득액 공제액 소득평가액 소득 원 원 원 원 재산 재산총액 인적부채액 공제액 순재산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환산대상 환산대상재산액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원 원 원 사유 ☐ 소득인정액초과 ☐ 소득초과 ☐ 재산초과 ☐ 부양의무자 ☐ 기타()																	
보장사유	기초생활보장	☐ 연소(18세 미만) ☐ 연로(65세 이상) ☐ 질병 ☐ 장애 ☐ 임신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영유아 보육료(0~4세)·유아교육비(3~4세) ☐ 만5세아 보육·유아교육 ☐ 장애아보육료 ☐ 다문화아동보육 ☐ 방과 후 보육 ☐ 양육수당																	
	청소년·청소년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지원 ☐ 활동지원 ☐ 기타지원()																	
	청소년·청소년	☐ 부모사망 ☐ 부모가출 ☐ 부사망·모사망 ☐ 부가출·모사망 ☐ 부모경애 ☐ 부모배필 ☐ 부모미혼 ☐ 부모노령 ☐ 부모부양 ☐ 부모복합 ☐ 기타()																	
	한부모가족	☐ 배우자 사망 ☐ 배우자 가출 ☐ 배우자 유기 ☐ 배우자 생사불명 ☐ 배우자 해외장기체류 ☐ 외국인 ☐ 배우자 장기복역 ☐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 미혼모 ☐ 미혼부 ☐ 이혼 ☐ 조손가정 ☐ 기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 선천성: 유전성, 약물중독, 출산시 의료사고, 원인불명 기타 ☐ 후천성: 질병, 퇴행성장애,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염병, 기타 사고 음향의상장난장, 미상, 기타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세대주	
변동 사유		주 소		주 소 변동 사항				전입 일자			
위와 명)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자 산							
		전가구원 소득액		건축물 토 지		공 제		장기저축 생활준비금		재산총액	
		소득공제액		어업권/ 임목재산				추가기초공제		공제총액	
				자동차				금융기관		기초공제액	
		전가구원 소득평가액		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금융기관외 기 관 대출금		인정부채액	
				금융재산				임대보증금		소득환산액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동 산						소득인정액	
				회원권등				공증사채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297mm×210mm(일반용지 60g/㎡(세활용품))											

$$f_{-2})$$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제화용품))

(갑-3)

관리번호									세대주	
자활지원 대상자										
성명	조건부수급자 구분									
	자활역량평가점수	지활방향	근로여부	가구특성	유형	자활의지				
성명	자활사업					조건 이행여부				
	내용	의뢰기관	사업명	참여기간	급여(임금)	이행여부	급여중지일(재개일)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8 ●●



의료비 부담액	성명	1차	연도	금액	(작성일자:)		작성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립촉진수당	성명	1차	연도	금액	□ 배우자유가 □ 배우자생사불명 □ 배우자해외장기체류 □ 청소년한부모(25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 배우자제한 □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미혼부 □ 조부모가정 □ 기타 ()	성명	학교명	학년반
			연월일	금액					
가구별 자산 형성계좌지원	성명	계좌명	연도	금액	탈수급등 성공수당	성명	1차	2차	3차
			연월일	금액					

(갑-5)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지

□ 배우자사망 □ 배우자기초
□ 배우자 장기복역 □ 배우자 장
□ 이혼 □ 미혼

성명	학교명	계좌개설일	계좌(찾는 날짜)	탈수급등 성공수당	성명	1차	2차	3차
학비지원	성명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아동양육비 지원	성명	2차	3차	4차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2차	3차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도	금액
가구별 자산 형성계좌지원	성명	연월일	금액	연월일	금액	연월일	금액	연도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화용품))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성명	복거육구		☐ 보장구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의료비 ☐ 학비 ☐ 자급대여 ☐ 시설입소 ☐ 활동보조서비스(인)								
장애등급	종합장애등급		심사완료여부		최초장애등록일		중복장애유무				
	주 장 에			부 장 에							
	진단이력	유 형	등급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진단이력	유 형	등급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장애사유	주 장 에	☐ 선천성 () ☐ 후천성 () ☐ 선천성 () ☐ 후천성 ()									
	보 장 구	종 류	기 관	교부일자	발생연령	특수교육	기관명	직 종	기관명	발생연령	
	취업알선	직 종	학 교	학년/반	일 자	직업훈련	직 종	의료급여종별	기간	기간	
	학 비	대상자	학교명	지급개시일자	대상자	의료비	대상자	대상자	기간	기간	
구 원	장애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제공개시일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 1종 ☐ 2종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시설명	소제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보행상 장애 유무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자동차 표지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297mm×210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을-1)

관리번호	장애인연금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급개시일	지급정지 일자	자격종료일	유	수급사항	
							해당구분	지급액 구분
							☐ 장애인 단 ☐ 장애인 부	☐ 기초급여 ☐ 전액 ☐ 감액(원)
								☐ 부가급여 (원)
이력	변동내역	개인현황	□ 1회차() □ 2회차() □ 3회차()			신청	수급결정여부 ☐ 연금액 ☐ 기타	
		소득·재산·부채	□ 1회차() □ 2회차() □ 3회차()			내역		
	연금액	연금액	□ 1회차() □ 2회차() □ 3회차()			태로	사 유	
	연금액	변동사유	□ 1회차() □ 2회차() □ 3회차()			과부	부과금액 ☐ 100,000원 ☐ 수급권 소멸 발생 미신고 ☐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거짓 자료제출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을-3)

관리번호									세대주
노인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검진일자	조치 의견	검진의료기관	검진결과(정상여부 등)			
강 진 단	1차 검진								
	2차 검진								
취업알선	대상자 성명	희망직종	취업일자	취업기관	비고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성명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297mm×210mm(일반용지 60g/㎡(세활용품))

●● 133

(을-5)

관리번호				세대주			
부랑인·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요구	☐ 시설입소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기타()				
시설입소	대상자	시설명	소재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후원·자원봉사 내용							
후원자		후원방법 (정기, 일시)		후원기간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현금 물품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후원용도	소년소녀가장 월후원액 후원금관리자 관 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대상자 비 고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1) (관리번호 : 세대주 :)

상 담 내 용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1차 상담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 상담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제활용품))



(2-अ)

영
내
금
상

3차 상담	구분	성명	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구분	성명	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4차 상담	구분	성명	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구분	성명	주요변동사항
	보장대상자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illegible]



[11] < 2011.1.1 >

보장비용 · 부담이득 징수 통지서 (○차)				
()				
	()			
()				
	·	□	□	□ ()
()				
「 」 51 , 「 」 44 , 「 」 12 「 」 46 , 「 」 32 , 「 」 17 직인				
1. 2. 1) 2) 3) 4) 5) 6) 7) 8) 9)	. : 60 60 : 60 . . . : 90 . . . : 90 90 (, 60) : . . . 60 : 60 . . . : 20 , . : 90 (, 60) 「 」 18 90 .			
210mm×297mm(60g/㎡())				



[12] < 2011.1.1 >

이 의 신 청 서					
			()		
		(:)			
			()		
		(:)			
		☐	☐	/ / /	☐ ☐
☐					
☐					
「 15 , 「 38 , 「 28 , 「 16 , 「 18 「 84 , 「 30 1 , 「 18 「 18 . () . . .					
	1.	. . 10 . , 7 . 60 , 60 (30), 30 , 90 (, 60			
	2.	. . 30 . . 15 .			
	1.	1			
	2.				
	3.	()			

210mm×297mm

60g/m²()



[3]

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				
()				
	「 6 1 3 9 , 15 , 18 6 3 , 8 4 , 10 3 , 11 1 3 , 12 1 3 , , , ,			
()				
()	「 6 1 3 9 , 15 , 18 6 3 , 8 4 , 10 3 , 11 1 3 , 12 1 3 , , , , .			
20 () : () :				
※ : () () < > 1 500 .				

210mm×297mm 60g/㎡ ()



[4] ()

제 호				처리기간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3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제 호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승인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 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월간) · 월까지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신청	승인여부 통지	접수 확인 결재
※ 유의사항 기초노령연금금 지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9]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14	
	☐	: 1				()	
	☐	() : 2					
	☐	() : 3					
						[() ~]	
「 9 1 10 1 . 20 () . . .							
	1. 2. 3. 4.	1 3. (					
	1. 2. 3. 4.	, , , . . , , , 2 .					
	1. 2. 3. 4.	: ☐ ☐ : ☐ 1 ☐ 2 ☐ 3 : () :					

210mm×297mm

60g/m²()

[11]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30	
()						
		☐ ☐ ☐ ☐				
※						
「 」 18 12 1 . 20 () . . .						
	1. 1 2. 3. ()					
	「 」 88 30 .					

210mm×297mm 60g/m²()

[illegible]



2011년 기초노령연금 사업 안내

인쇄일 : 2011년 1월 일

발행일 : 2011년 1월 일

발행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전화) (02) 2023-8367~8369

8371, 8374~8379

8381, 8382, 8386

(팩스) (02) 2023-8380

인쇄처 : (주) 이문기업

(전화) (02) 3672-0129

: <http://bop.mw.go.kr/>